|  |  |  |
| --- | --- | --- |
| **《변호사 집무행위 규범》발부와**  **관련한 통지**  律發通[2011] 제3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협회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변호사협회,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사법국:  변호사 집무행위에 대한《변호사법》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집무행위 규범(잠정)》원고를 수정하여 새《변호사 집무행위 규범》을 내오고 제7기 전국 변호사협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하여 공식 반포하였다. 이에 새《변호사 집무행위 규범》을 발부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중화전국 변호사협회  2011년 11월 9일  별첨: 변호사 집무행위 규범  **변호사 집무행위 규범**  (2004년 3월 20일 전국 변호사협회 제9차 상무이사회의에서 잠정원고 통과, 2009년 12월 27일 제7기 제2차 이사회에서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변호사의 집무행위를 규범하고 변호사의 집무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과《중화전국 변호사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범은 변호사의 집무행위를 단속하는 지침으로서 변호사의 집무행위를 판단하는 업계표준이며 변호사의 자기행위 단속을 위한 준칙이다.  **제3조** 변호사가 집무과정에 이 규범의 강제성 규범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범문건에 의거하여 처벌하거나 징계한다. 이 규범중의 임의성 규범은 변호사가 자율로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이 규범은 중화전국 변호사협회 회원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 적용하고 변호사 사무소의 여타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범을 참작하여 적용한다.  **제2장 변호사의 기본 집무행위 규범**  **제5조** 변호사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의식과 집무기율을 지켜야 한다.  **제6조** 변호사는 신의성실하고 책무를 다 해야 하며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실시와 사회의 공평성 및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제7조** 변호사는 직업수양에 힘쓰고 변호사업계의 성망을 의식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제8조** 변호사는 집무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과 상업비밀을 지키고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과 기타의 누설을 원하지 않는 상황과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단, 의뢰인이나 기타의 계획 중이거나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 공중의 안전 또는 타인의 인신과 재산안전을 해치는 범죄사실이나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9조** 변호사는 동료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동 업계와 상호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가 사회공익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지원하며 적극 참여하도록 제창해야 한다.  **제11조** 변호사는 집무기간에 여타신분으로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변호사는 1개 변호사 사무소에서만 집무해야 한다.  변호사가 집무중지처벌을 받은 기간에 또는 변호사 사무소의 업무중지 정비기간이나 말소 후에 계속 동 사무소의 명의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변호사가 동일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본인이나 근친과 이익충돌이 있는 법률사무를 대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변호사가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담임한 경우 임기기간에는 소송대리 또는 변호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니 된다.  **제14조** 변호사의 하기 행위를 금지한다.  (1) 불량한 후과를 산생시키고 변호사업계의 성망을 손상하는 행위  (2) 국가의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합법적 직권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  (3)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구, 조직이나 단체에 참가하는 행위  (4) 법률, 법규, 변호사협회의 업계규범 및 직업의식에 위배되는 기타행위  (5) 사회 공중도덕에 위배되고 변호사 직업이미지를 손상하는 기타행위.  **제3장 변호사 업무추진에서의 행위규범**  **제1절 업무 추진원칙**  **제15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평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하고 변호사 직업의식과 집무기율을 준수하며 변호사업계에서 공인하는 업계준칙을 지키고 공평하게 경쟁해야 한다.  **제16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자기의 종합적 자질을 제고하고 법률사무를 질적으로 보장하며 자신의 업무 경쟁능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변호사업무를 전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17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합법적인 광고를 통하여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 및 자기 업무범위와 전문특장을 홍보할 수 있다.  **제18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학술논문 발표, 사건분석, 테마답변, 교수, 법률보급 등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전문분야를 홍보할 수 있다.  **제19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각종 형태의 테마나 전문 세미나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자신의 전문특장을 홍보할 수 있다.  **제20조** 변호사는 자기의 명의로 또는 소속 변호사 사무소의 명의로 각종 사회 공익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21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 업무추진 과정에 부당경쟁해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변호사 업무추진 광고**  **제22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회 공중에게 변호사 개인이나 변호사 사무소의 법률사무 관련 업무정보를 광고할 수 있다.  **제23조** 광고를 내는 변호사는 국가의 법률, 법규, 규정제도 및 이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 변호사가 내는 광고는 사회공중이 변호사의 광고임을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 변호사가 변호사 개인의 명의로 광고를 발표할 수 있으며 변호사 사무소의 명의로 발표할 수도 있다. 변호사 개인의 명의로 광고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개인의 소속 집무기구의 명칭을 밝히고 변호사 개업증명서 코드를 밝혀야 한다.  **제26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변호사광고를 발표하지 못한다.  (1) 연차 고과를 받지 않은 상황  (2) 집무중지나 업무중지 정비 처벌기간인 상황  (3) 통보비판, 공개질책을 받고 만 1년이 안 되는 상황.  **제27조** 변호사 개인의 광고내용은 변호사의 성명, 초상, 연령, 성별, 학력, 학위, 전문분야, 변호사 개업일자, 변호사 소속 변호사 사무소 명칭, 소속 변호사 사무소의 집무기한, 비용표준, 연락방법, 합법적으로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 집무실적에 한해야 한다.  **제28조** 변호사 사무소의 광고 내용은 변호사 사무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전자 우편함, 인터넷 주소, 소속 변호사협회, 사무소의 집무변호사 및 합법적으로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 업무실적에 한해야 한다.  **제29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는 변호사 사명에 배치되고 변호사 이미지를 손상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작해서는 아니 되며 일반 상업광고에서 취하는 과장수단으로 광고를 제작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변호사 광고에 소속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관리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3절 변호사 홍보**  **제31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 사실과 법률을 왜곡하거나 공중이 변호사에 대한 불합리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홍보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 자신이 종사하는 모종 전문 법률사무의 분야를 홍보할 수 있으나 모 전문분야의 권위자나 전문가로 공인된다고 자칭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변호사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사무소와 변호사 사무소를 비교하는 홍보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당사자와의**  **관계규범**  **제1절 수임 대리관계**  **제34조** 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사항의 범위, 내용, 권한, 비용, 기간 등을 상의하고 합의를 본 다음 변호사 사무소와 의뢰인이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35조** 변호사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률과 의뢰합의서의 의뢰사항에 따라 의뢰인 또는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36조**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법률의 규정, 공평성과 정의 및 변호사의 집무의식에 근거하여 의뢰인 또는 당사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을 선정할 권한이 있다.  **제37조** 변호사는 법률에서 규정한 기간, 시효 및 의뢰인과 약속한 시간에 엄격히 준하여 의뢰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이 의뢰사항의 진척상황을 알고저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회답해야 한다.  **제38조** 변호사는 변호사 집무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업무일지를 완벽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39조** 변호사는 의뢰인 또는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의 원문, 물증, 시청자료 및 기타자료를 차실 없이 보관해야 한다.  **제40조** 수임 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뢰한 권한 내에서 업무활동을 전개해야지 의뢰권한을 초월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수임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호나 대리를 거부하지 못하며 기타방식으로 의뢰를 종지하지 못한다. 의뢰사항이 불법인 경우 또는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법률사무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에 종사하거나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한 중대사실을 고의로 숨긴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시정을 고하고 변호 또는 대리를 거절하거나 기타방식으로 의뢰를 종지하는 동시에 이미 이행한 법률사무에 대한 비용을 수취할 권한이 있다.  **제42조** 수임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난관이나 위험을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변호사 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허위언약 금지**  **제43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과 증거에 의거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뢰인에게 분석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변호사의 변호와 대리인의 의견이 부정된 것은 허위언약이 아니다.  **제3절 의뢰인의 권익 불법도모 금지**  **제45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가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편리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쟁의권익을 도모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가 불법으로 의뢰인의 쟁의권익에서 발생하는 경제에 연계해서는 아니 되며 쟁의표적물을 자기에게 판매하도록 의뢰인과 약정해서는 아니 된다. 타인에게 의뢰하여 의뢰인의 쟁의표적물을 자기 또는 자기 근친대신 매입, 임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변호사 사무소에서 합법적으로 당사자나 의뢰인과 합의하여 현금이나 표적물 회수를 전제로 일정비율의 현금이나 실물을 변호사비용으로 약정할 수 있다.  **제4절 이익충돌 심사**  **제48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이익충돌 심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의뢰를 접수하기 전에 이익충돌 심사를 하고 의뢰 접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9조** 의뢰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관계나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접수하지 말아야 하며 자진 기피해야 한다.  **제50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당사자와 의뢰관계를 수립하지 말거나 유지하지 말아야 한다.  (1) 변호사가 동일 사건에서 쌍방의 대리인을 담당하거나 대리인과 본인 또는 그 근친 간에 이익충돌이 있는 법률사무인 상황  (2) 소송 또는 비 소송 업무를 담당한 변호사의 근친이 상대측 당사자의 법정 대표자이거나 대리인인 상황  (3) 모종 사항이나 사건을 직접 취급하였거나 심리했던 정부기관의 직원, 재판관, 검찰관, 중재원이 변호사로 개업한 후 당해 사항이나 사건을 취급하게 된 경우  (4) 동일 변호사 사무소의 부동한 변호사가 동시에 동일 형사사건의 피고 대리인과 범죄 용의자나 피고의 변호인을 담당한 상황. 단, 당해 현 지역에 유일한 변호사 사무소이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재 사건에서 동일 변호사 사무소의 부동한 변호사가 쟁의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본 사무소나 그 직원이 당사자 일방인 사건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가 상대측 당사자의 대리인인 상황  (6) 비 소송업무 각 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의뢰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가 동시에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각 측의 대리인을 담당한 상황  (7) 의뢰관계 종지 후에 동일 변호사 사무소나 동일 변호사가 동일 사건의 후속심리에서 상대방의 의뢰를 수임한 상황  (8) 이 조 제 (1) 호 내지 제 (7) 호의 상황과 유사하고 변호사 집무경험과 업계 상식에 의하여 주동적으로 기피해야 하는 기타 이익충돌상황.  **제51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주동적으로 기피해야 한다. 단, 의뢰인이 그의 대리인이 되거나 또는 이미 담당한 대리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민사소송, 중재사건 일방 당사자의 의뢰를 수임한 변호사의 동일 변호사 사무소의 여타변호사가 사건 상대측 당사자의 근친인 상황  (2)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자의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의 동일 변호사 사무소의 여타변호사가 피해자의 근친인 상황  (3) 동일 변호사 사무소에서 대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나 비 소송업무 당사자의 상대측 당사자의 여타 법률업무 의뢰를 수임한 상황  (4) 변호사 사무소와 의뢰인과 법률사무관계가 있고 모 소송사건이나 중재사건에서 당해 의뢰인이 당해 변호사 사무소에 대리인을 의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해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가 당해 의뢰인 상대측 당사자의 대리인을 담당한 상황  (5) 의뢰관계 종지 후 1년 내에 변호사가 다시 동일 법률사무의 원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측 당사자의 의뢰를 수임한 상황  (6) 이 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상황과 유사하여 변호사의 집무경험이나 업계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타상황.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 상기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이익충돌 사실과 발생할 수 있는 후과를 고지하여 의뢰인이 의뢰관계의 수립 또는 유지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의뢰인이 의뢰관계 수립 또는 유지를 결정한 경우 동의서를 체결하여 당사자가 이익충돌의 기본사실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후과를 알고 있으면서 당 변호사 사무소 및 변호사와 의뢰관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시해야 한다.  **제52조** 의뢰인이 상황을 알고 동의서를 체결하여 면허의사를 표시한 경우 담당변호사는 사건 처리과정에 각 의뢰인의 사건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사건 관련정보를 상대측 담당변호사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5절 의뢰인의 재산보관**  **제53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보관합의서를 체결하고 의뢰인의 재산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합의서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54조** 의뢰인의 재산을 수탁 보관하는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재산과 변호사 사무소의 재산, 변호사의 재산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제6절 의뢰 이전**  **제55조**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변호사 사무소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법률사무를 여타 변호사 사무소에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단, 급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할 수 있으나 즉시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56조** 수임변호사가 돌발적인 질환, 차출 등 급박한 상황에서 의뢰합의서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시 변호사 사무소에 알려야 하며 변호사 사무소에서 여타 변호사를 지정하여 법률사무를 계속하게 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57조**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 이전으로 하여 의뢰인의 비용지출을 증가하지 못한다.    **제7절 의뢰관계의 해제와 종지**  **제58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소에서 의뢰관계를 종지해야 한다.  (1) 의뢰인이 의뢰협의 종지를 원하는 경우  (2) 변호사의 개업증명서가 말소되었거나 집무중지 처벌을 받았고 의뢰인이 변호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3) 이 규범 제50조에서 규정한 이익충돌상황을 발견한 경우  (4) 수임변호사의 건강상황이 의뢰합의서를 계속 이행할 수 없고 협상결과 의뢰인이 변호사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5) 의뢰합의서를 계속 이행함으로써 법률, 법규, 규정제도 또는 이 규범을 위반하게 되는 겨우  **제59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데도 의뢰인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소에서 의뢰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1)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법률사무를 이용하여 불법 범죄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2)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실현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목표를 제출하는 경우  (3) 의뢰인이 의뢰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전에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사무로 하여 변호사에게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조성하게 되거나 변호사에게 과분하고 불합리한 어려움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  (5) 합법적인 기타이유가 있는 경우.  **제60조**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 규범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리를 종료하거나 의뢰관계를 해제하는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소와 협상하여 합의를 해제하는 경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의뢰 대리합의를 종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미 제공한 법률사무부분의 비용을 수취할 권한이 있다.  **제61조** 변호사 사무소에서 의뢰인과 의뢰관계를 해제한 후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원본, 증거물, 시청자료 원판 등 증거를 반환하고 복제 건을 남겨 보관할 수 있다.  **제5장 변호사의 소송이나 중제 참여행위 규범**  **제1절 조사와 증거취득**  **제62조** 변호사는 합법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취득해야 한다.  **제63조** 변호사는 허위증거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이나 중재기구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증인의 신분으로 출정하여 입증하는 변호사는 당해사건의 변호인이나 대리인 의뢰를 수임하고 출정하지 못한다.  **제2절 법정존중 및 사법관 접촉규범**  **제65조** 변호사는 법정기율과 중재정의 기율을 준수하고 출정시간, 입증시한, 서류 제출기한 및 기타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6조** 변호사는 개정 심리과정에 법정과 중재정을 준중시해야 한다.  **제67조** 변호사가 집무과정에 사실의 진위, 증거의 진위 및 법률적용의 정확여부에 대한 주장이 소송 상대측과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사건 심리 측에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사건 심리 측과 접촉하여 의견을 교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기관 내의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야 하다.  **제68조** 변호사가 사건 심리과정에 사건 심리와 관련한 사법, 중재 인원과 사사로이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69조** 변호사가 사법기관이나 중재기관 관련자에게 뇌물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보수 또는 기타이익(물질이익과 비 물질형태의 이익 포함) 제공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사법, 중재 담당자와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가 뇌물을 소개하거나 당사자를 사촉, 유인하여 뇌물을 바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절 법정에서의 품위와 언사**  **제70조**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법정이나 중재정에 출정하는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변호사 출정복장을 차리고 출정휘장을 달고 출정하는 등 변호사의 직업이미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제71조** 법정이나 중재정에서 발언하는 변호사는 정중하고 대범해야 하며 언사가 문명하고 신분에 어울려야 한다.  **제6장 변호사 간의 관계 규범**  **제1절 존중과 협력**  **제72조** 변호사는 여타 변호사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73조** 법정심리나 상담 과정에 각 측의 변호사는 서로 존중해야지 남을 헐뜯고 비꼬거나 모독하는 언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가 공중장소나 미디어를 통해 악의로 동료의 명성을 깎고 중상하고 해치는 언론을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변호사가 집무기구를 변경하는 경우 의뢰인 및 원 변호사 사무소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신임변호사를 접수하는 경우 원 변호사 사무소의 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76조**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분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 사무소의 해결방안은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소의 분규해결에 복종해야 한다.  **제2절 부당경쟁 금지**  **제77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부정당한 수단으로 업무경쟁을 하여 여타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성망이나 기타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집무행위의 부당경쟁으로 인정한다.  (1) 여타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신용이나 성망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상황  (2) 정당한 이유 없이 동 지역 동 업계 수금표준보다 낮은 조건으로 업무를 수주하거나 고객, 중개인, 추천인에게 커미션, 현금,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증여하기로 약속하는 등 방법으로 업무를 쟁취하는 상황  (3) 고의로 의뢰인과 그 대리인 변호사 간의 분규를 조작하는 상황  (4) 의뢰인에게 본 변호사 사무소가 사법기관, 정부기관, 사회단체나 그 직원과 특수 관계가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황  (5) 법률사무 제공결과 또는 소송결과에 대한 허위언약을 하는 상황  (6) 의뢰인을 협조하여 부당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부정당한 방식이나 수단으로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황.  **제79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행정기관, 업계 관리부문 및 기업과의 접촉에서 하기 부정당한 수단으로 동 업계의 업무경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모 기관, 모 부문, 모 업계를 통하여 모종 법률사무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주하는 행위  (2) 의뢰인에게 그가 지정하는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가 제공하는 법률사무를 접수하게 하고 여타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정당한 업무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제80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사법기관 및 그 직원과 접촉하면서 변호사의 겸직신분으로 수임한 업무의 정상적인 처리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업무경쟁을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범위의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하기 부정당한 해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법정기구의 인가를 받은 여타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법률사무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의뢰인을 제한하는 행위  (2) 의뢰인에게 자기가 제공하는 법률사무 또는 그가 지정한 변호사의 법률사무를 접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상기한 행위를 거부하는 의뢰인에 대해 법률사무를 거부, 중단, 지연, 감소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제82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 간에 하기 수단으로 상대측의 공평경쟁을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1) 내통하여 비용기준을 올리거나 낮추는 수단  (2)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여타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견적이나 법률사무 제공조건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수단  (3) 비용견적이나 법률사무 제공조건 등 미공개정보를 누설하여 관련 변호사 사무소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는 수단.  **제83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사회의 특정명칭이나 지명도가 보다 높은 명칭 및 그 명칭을 대표하는 기호, 도안과 문자, 코드를 사용하여 의뢰인의 오해를 조성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범에서 사회의 특정명칭, 지명도가 보다 높은 명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련 정당, 사법기관, 행정기관, 업계협회 명칭  (2)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보다 높은 법학대학교나 과학연구기구의 명칭  (3) 사회공중에 알려진, 지명도가 보다 높은 변호사가 아닌 공중인물  (4) 지명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명칭.  **제84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법률사무 영예칭호를 날조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취득한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의 법률사무 영예칭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시와 유효기간을 밝혀야 한다.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미 취득한 영예칭호를 변조하여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취소된 변호사 사무소는 그 영예칭호를 계속 사용하지 못한다.  **제7장 변호사와 그 소속 변호사 사무소와의**  **관계규범**  **제85조** 변호사 사무소는 변호사의 집무기구이다 변호사 사무소는 집무변호사를 교육, 관리, 감독할 직책을 부담한다.  **제86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집무관리, 이익충돌 심사, 비용수취와 재무관리, 투서 조사처리, 연차고과, 보관서류 관리, 근로계약 등 제도를 수립하여 건전히 하고 집무변호사의 직업의식, 집무기율 준수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제87조**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와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집무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88조** 변호사의 업무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통일적으로 수임하고 의뢰인과 서면 의뢰계약을 체결하며 국가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비용을 수취한다.  **제89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90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변호사의 시사정치학습과 실무학습을 마련하고 집무경험을 종합하여 교류함으로써 변호사의 실무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제91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집무실습 신청자의 실습을 진지하게 지도하고 진실한 실습 감정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92조** 변호사 사무소에서 법률사무 제외한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93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의무를 이행하고 구조대상에게 법률사무를 제공하며 구조대상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94조** 변호사 사무소에서 집무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자나 집무중지 처별기간에 있는 자를 변호사의 명의로 법률사무를 제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5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그가 파견하여 법률사무를 협조하는 직원에게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제지하거나 보완책을 취하는 동시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96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변호사와 법률사무 실습생의 업무와 직업의식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제8장 변호사와 변호사협회와의 관계 규범**  **제97조**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변호사협회에서 정한 변호사 집무 규범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변호사협회 장정에 규정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98조**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하는 실무진수와 검증에 참가하여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9조** 변호사가 국제성 변호사조직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고 중국변호사의 신분으로 경외회의 등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 비치해야 한다.  **제100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가 집무행위로 하여 형사사건의 피고나 민사사건의 피고로 되었거나 행정기관의 조사와 처벌을 받은 경우 반드시 변호사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1조**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하는 변호사 실무연구 활동에 참가하여 변호사협회에서 배정한 실무 연구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하는 공익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제102조** 변호사는 변호사 집무활동에서 발생한 분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변호사협회에서 조정하여 달성한 조정합의서를 이행해야 한다.  **제103조** 변호사는 변호사 집무분규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변호사는 법률, 법규, 규정제도에 근거한 변호사협회의 처벌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제104조** 변호사는 정한 일시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9장 부 칙**  **제105조**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규범》을 위반한 경우 변호사협회에서《변호사협회 회원 규정위반 징계규칙》과 관련 업계 규범문건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106조** 지방 변호사협회에서는 이 규범에 의거하고 당지 실정에 결부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실시세칙이 이 규범과 충돌되어서는 아니 되며 중화전국변호사협회에 비치해야 시행할 수 있다.  **제107조** 이 규범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범은 수정안에 따라 수정했으며 수정안은 상무이사회에서 통과하면 공식 시행한다.  **제108조** 이 규범은 중화전국 변호사협회에서 해석한다. |  | **关于印发《律师执业行为规范》的通知**  律发通﹝2011﹞35号    各省、自治区、直辖市律师协会和新疆生产建设兵团律师协会，总政司法局：  　　为了贯彻落实《律师法》对律师执业行为的要求，全国律协对《律师执业行为规范（试行）》稿进行了修改，形成了新《律师执业行为规范》，并经全国律协七届二次理事会审议通过，现予以正式颁布。现将新《律师执业行为规范》印发你会，请遵照执行。  中华全国律师协会  二零一一年十一月九日    附件：律师执业行为规范  **律师执业行为规范**  （2004年3月20日五届全国律协第九次 常务理事会审议通过试行；2009年12月27日七届二次理事会修订）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律师执业行为，保障律师执业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和《中华全国律师协会章程》制定本规范。  **第二条** 本规范是律师规范执业行为的指引，是评判律师执业行为的行业标准，是律师自我约束的行为准则。  **第三条** 律师执业行为违反本规范中强制性规范的，将依据相关规范性文件给予处分或惩戒。本规范中的任意性规范，律师应当自律遵守。  **第四条** 本规范适用于作为中华全国律师协会会员的律师和律师事务所,  律师事务所其他从业人员参照本规范执行。  **第二章 律师执业基本行为规范**  **第五条** 律师应当忠于宪法、法律，恪守律师职业道德和执业纪律。  **第六条** 律师应当诚实守信、勤勉尽责，依据事实和法律，维护当事人合法权益，维护法律正确实施，维护社会公平和正义。  **第七条** 律师应当注重职业修养，自觉维护律师行业声誉。  **第八条** 律师应当保守在执业活动中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不得泄露当事人的隐私。  　　律师对在执业活动中知悉的委托人和其他人不愿泄露的情况和信息，应当予以保密。但是，委托人或者其他人准备或者正在实施的危害国家安全、公共安全以及其他严重危害他人人身、财产安全的犯罪事实和信息除外。  **第九条** 律师应当尊重同行，公平竞争，同业互助。  **第十条** 律师协会倡导律师关注、支持、积极参加社会公益事业。  **第十一条** 律师在执业期间不得以非律师身份从事法律服务。  　　律师只能在一个律师事务所执业。  　　律师不得在受到停止执业处罚期间继续执业，或者在律师事务所被停业整顿期间、注销后继续以原所名义执业。  **第十二条** 律师不得在同一案件中为双方当事人担任代理人，不得代理与本人或者其近亲属有利益冲突的法律事务。  **第十三条** 律师担任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组成人员的，任职期间不得从事诉讼代理或者辩护业务。  **第十四条** 律师不得为以下行为：  　　（一）产生不良社会影响，有损律师行业声誉的行为；  　　（二）妨碍国家司法、行政机关依法行使职权的行为；  　　（三）参加法律所禁止的机构、组织或者社会团体；  　　（四）其他违反法律、法规、律师协会行业规范及职业道德的行为。  　　（五）其他违反社会公德，严重损害律师职业形象的行为。  **第三章 律师业务推广行为规范**  **第一节 业务推广原则**  **第十五条** 律师和律师事务所推广律师业务，应当遵守平等、诚信原则，遵守律师职业道德和执业纪律，遵守律师行业公认的行业准则，公平竞争。  **第十六条** 律师和律师事务所应当通过提高自身综合素质、提高法律服务质量、加强自身业务竞争能力的途径，开展、推广律师业务。  **第十七条** 律师和律师事务所可以依法以广告方式宣传律师和律师事务所以及自己的业务领域和专业特长。  **第十八条** 律师和律师事务所可以通过发表学术论文、案例分析、专题解答、授课、普及法律等活动，宣传自己的专业领域。  **第十九条** 律师和律师事务所可以通过举办或者参加各种形式的专题、专业研讨会，宣传自己的专业特长。  **第二十条** 律师可以以自己或者其任职的律师事务所名义参加各种社会公益活动。  **第二十一条** 律师和律师事务所在业务推广中不得为不正当竞争行为。  **第二节 律师业务推广广告**  **第二十二条** 律师和律师事务所为推广业务，可以发布使社会公众了解律师个人和律师事务所法律服务业务信息的广告。  **第二十三条** 律师发布广告应当遵守国家法律、法规、规章和本规范。  **第二十四条** 律师发布广告应当具有可识别性，应当能够使社会公众辨明是律师广告。  **第二十五条** 律师广告可以以律师个人名义发布，也可以以律师事务所名义发布。以律师个人名义发布的律师广告应当注明律师个人所任职的执业机构名称，应当载明律师执业证号。  **第二十六条** 具有下列情况之一的，律师和律师事务所不得发布律师广告：  　　（一）没有通过年度考核的；  　　（二）处于停止执业或停业整顿处罚期间的；  　　（三）受到通报批评、公开谴责未满一年的。  **第二十七条** 律师个人广告的内容，应当限于律师的姓名、肖像、年龄、性别，学历、学位、专业、律师执业许可日期、所任职律师事务所名称、在所任职律师事务所的执业期限；收费标准、联系方法；依法能够向社会提供的法律服务业务范围；执业业绩。  **第二十八条** 律师事务所广告的内容应当限于律师事务所名称、住所、电话号码、传真号码、邮政编码、电子信箱、网址；所属律师协会；所内执业律师及依法能够向社会提供的法律服务业务范围简介；执业业绩。  **第二十九条** 律师和律师事务所不得以有悖律师使命、有损律师形象的方式制作广告，不得采用一般商业广告的艺术夸张手段制作广告。  **第三十条** 律师广告中不得出现违反所属律师协会有关律师广告管理规定的内容。  **第三节 律师宣传**  **第三十一条** 律师和律师事务所不得进行歪曲事实和法律，或者可能使公众对律师产生不合理期望的宣传。  **第三十二条** 律师和律师事务所可以宣传所从事的某一专业法律服务领域，但不得自我声明或者暗示其被公认或者证明为某一专业领域的权威或专家。  **第三十三条** 律师和律师事务所不得进行律师之间或者律师事务所之间的比较宣传。  **第四章** **律师与委托人或当事人的**  **关系规范**  **第一节 委托代理关系**  **第三十四条** 律师应当与委托人就委托事项范围、内容、权限、费用、期限等进行协商，经协商达成一致后，由律师事务所与委托人签署委托协议。  **第三十五条** 律师应当充分运用专业知识，依照法律和委托协议完成委托事项，维护委托人或者当事人的合法权益。  **第三十六条** 律师与所任职律师事务所有权根据法律规定、公平正义及律师执业道德标准，选择实现委托人或者当事人目的的方案。  **第三十七条** 律师应当严格按照法律规定的期间、时效以及与委托人约定的时间办理委托事项。对委托人了解委托事项办理情况的要求，应当及时给予答复。  **第三十八条** 律师应当建立律师业务档案，保存完整的工作记录。  **第三十九条** 律师应谨慎保管委托人或当事人提供的证据原件、原物、音像资料底版以及其他材料。  **第四十条** 律师接受委托后，应当在委托人委托的权限内开展执业活动，不得超越委托权限。  **第四十一条** 律师接受委托后，无正当理由不得拒绝辩护或者代理、或以其他方式终止委托。委托事项违法、委托人利用律师提供的服务从事违法活动或者委托人故意隐瞒与案件有关的重要事实的，律师有权告知委托人并要求其整改，有权拒绝辩护或者代理、或以其他方式终止委托，并有权就已经履行事务取得律师费。  **第四十二条** 律师在承办受托业务时，对已经出现的和可能出现的不可克服的困难、风险，应当及时通知委托人，并向律师事务所报告。  **第二节 禁止虚假承诺**  **第四十三条** 律师根据委托人提供的事实和证据，依据法律规定进行分析，向委托人提出分析性意见。  **第四十四条** 律师的辩护、代理意见未被采纳，不属于虚假承诺。  **第三节 禁止非法牟取委托人权益**  **第四十五条** 律师和律师事务所不得利用提供法律服务的便利，牟取当事人争议的权益。  **第四十六条** 律师和律师事务所不得违法与委托人就争议的权益产生经济上的联系，不得与委托人约定将争议标的物出售给自己；不得委托他人为自己或为自己的近亲属收购、租赁委托人与他人发生争议的标的物。  **第四十七条** 律师事务所可以依法与当事人或委托人签订以回收款项或标的物为前提按照一定比例收取货币或实物作为律师费用的协议。  **第四节 利益冲突审查**  **第四十八条** 律师事务所应当建立利益冲突审查制度。律师事务所在接受委托之前，应当进行利益冲突审查并作出是否接受委托决定。  **第四十九条** 办理委托事务的律师与委托人之间存在利害关系或利益冲突的，不得承办该业务并应当主动提出回避。  **第五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律师及律师事务所不得与当事人建立或维持委托关系：  　　（一）律师在同一案件中为双方当事人担任代理人，或代理与本人或者其近亲属有利益冲突的法律事务的；  　　（二）律师办理诉讼或者非诉讼业务，其近亲属是对方当事人的法定代表人或者代理人的；  　　（三）曾经亲自处理或者审理过某一事项或者案件的行政机关工作人员、审判人员、检察人员、仲裁员，成为律师后又办理该事项或者案件的；  　　（四）同一律师事务所的不同律师同时担任同一刑事案件的被害人的代理人和犯罪嫌疑人、被告人的辩护人，但在该县区域内只有一家律师事务所且事先征得当事人同意的除外；  　　（五）在民事诉讼、行政诉讼、仲裁案件中，同一律师事务所的不同律师同时担任争议双方当事人的代理人，或者本所或其工作人员为一方当事人，本所其他律师担任对方当事人的代理人的；  　　（六）在非诉讼业务中，除各方当事人共同委托外，同一律师事务所的律师同时担任彼此有利害关系的各方当事人的代理人的；  　　（七）在委托关系终止后，同一律师事务所或同一律师在同一案件后续审理或者处理中又接受对方当事人委托的；  　　（八）其他与本条第（一）至第（七）项情形相似，且依据律师执业经验和行业常识能够判断为应当主动回避且不得办理的利益冲突情形。  **第五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律师应当告知委托人并主动提出回避，但委托人同意其代理或者继续承办的除外：  　　（一）接受民事诉讼、仲裁案件一方当事人的委托，而同所的其他律师是该案件中对方当事人的近亲属的；  　　（二）担任刑事案件犯罪嫌疑人、被告人的辩护人，而同所的其他律师是该案件被害人的近亲属的；  　　（三）同一律师事务所接受正在代理的诉讼案件或者非诉讼业务当事人的对方当事人所委托的其他法律业务的；  　　（四）律师事务所与委托人存在法律服务关系，在某一诉讼或仲裁案件中该委托人未要求该律师事务所律师担任其代理人，而该律师事务所律师担任该委托人对方当事人的代理人的；  　　（五）在委托关系终止后一年内，律师又就同一法律事务接受与原委托人有利害关系的对方当事人的委托的；  　　（六）其他与本条第（一）至第（五）项情况相似，且依据律师执业经验和行业常识能够判断的其他情形。  　　律师和律师事务所发现存在上述情形的，应当告知委托人利益冲突的事实和可能产生的后果，由委托人决定是否建立或维持委托关系。委托人决定建立或维持委托关系的，应当签署知情同意书，表明当事人已经知悉存在利益冲突的基本事实和可能产生的法律后果，以及当事人明确同意与律师事务所及律师建立或维持委托关系。  **第五十二条** 委托人知情并签署知情同意书以示豁免的，承办律师在办理案件的过程中应对各自委托人的案件信息予以保密，不得将与案件有关的信息披露给相对人的承办律师。  **第五节 保管委托人财产**  **第五十三条** 律师事务所可以与委托人签订书面保管协议，妥善保管委托人财产，严格履行保管协议。  **第五十四条** 律师事务所受委托保管委托人财产时，应当将委托人财产与律师事务所的财产、律师个人财产严格分离。  **第六节 转委托**  **第五十五条** 未经委托人同意，律师事务所不得将委托人委托的法律事务转委托其他律师事务所办理。但在紧急情况下，为维护委托人的利益可以转委托，但应当及时告知委托人。  **第五十六条** 受委托律师遇有突患疾病、工作调动等紧急情况不能履行委托协议时，应当及时报告律师事务所，由律师事务所另行指定其他律师继续承办，并及时告知委托人。  **第五十七条** 非经委托人的同意，不能因转委托而增加委托人的费用支出。  **第七节 委托关系的解除与终止**  **第五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律师事务所应当终止委托关系：  　　（一）委托人提出终止委托协议的；  　　（二）律师受到吊销执业证书或者停止执业处罚的，经过协商，委托人不同意更换律师的；  　　（三）当发现有本规范第五十条规定的利益冲突情形的；  　　（四）受委托律师因健康状况不适合继续履行委托协议的，经过协商，委托人不同意更换律师的；  　　（五）继续履行委托协议违反法律、法规、规章或者本规范的。  **第五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经提示委托人不纠正的，律师事务所可以解除委托协议：  　　（一）委托人利用律师提供的法律服务从事违法犯罪活动的；  　　（二）委托人要求律师完成无法实现或者不合理的目标的；  　　（三）委托人没有履行委托合同义务的；  　　（四）在事先无法预见的前提下，律师向委托人提供法律服务将会给律师带来不合理的费用负担，或给律师造成难以承受的、不合理的困难的；  　　（五）其他合法的理由的。  **第六十条** 律师事务所依照本规范第五十八条、五十九条的规定终止代理或者解除委托的，委托人与律师事务所协商解除协议的，委托人单方终止委托代理协议的，律师事务所有权收取已提供服务部分的费用。  **第六十一条** 律师事务所与委托人解除委托关系后，应当退还当事人提供的资料原件、物证原物、视听资料底版等证据，并可以保留复印件存档。  **第五章 律师参与诉讼或仲裁规范**  **第一节 调查取证**  **第六十二条** 律师应当依法调查取证。  **第六十三条** 律师不得向司法机关或者仲裁机构提交明知是虚假的证据。  **第六十四条** 律师作为证人出庭作证的，不得再接受委托担任该案的辩护人或者代理人出庭。  **第二节 尊重法庭与规范接触司法人员**  **第六十五条** 律师应当遵守法庭、仲裁庭纪律，遵守出庭时间、举证时限、提交法律文书期限及其他程序性规定。  **第六十六条** 在开庭审理过程中，律师应当尊重法庭、仲裁庭。  **第六十七条** 律师在执业过程中，因对事实真假、证据真伪及法律适用是否正确而与诉讼相对方意见不一致的，或者为了向案件承办人提交新证据的，与案件承办人接触和交换意见应当在司法机关内指定场所。  **第六十八条** 律师在办案过程中，不得与所承办案件有关的司法、仲裁人员私下接触。  **第六十九条** 律师不得贿赂司法机关和仲裁机构人员，不得以许诺回报或者提供其他利益（包括物质利益和非物质形态的利益）等方式，与承办案件的司法、仲裁人员进行交易。  律师不得介绍贿赂或者指使、诱导当事人行贿。  **第三节 庭审仪表和语态**  **第七十条** 律师担任辩护人、代理人参加法庭、仲裁庭审理，应当按照规定穿着律师出庭服装，佩戴律师出庭徽章，注重律师职业形象。  **第七十一条** 律师在法庭或仲裁庭发言时应当举止庄重、大方，用词文明、得体。  **第六章 律师与其他律师的关系规范**  **第一节 尊重与合作**  **第七十二条** 律师与其他律师之间应当相互帮助、相互尊重。  **第七十三条** 在庭审或者谈判过程中各方律师应当互相尊重，不得使用挖苦、讽刺或者侮辱性的语言。  **第七十四条** 律师或律师事务所不得在公众场合及媒体上发表恶意贬低、诋毁、损害同行声誉的言论。  **第七十五条** 律师变更执业机构时应当维护委托人及原律师事务所的利益；律师事务所在接受转入律师时，不得损害原律师事务所的利益。  **第七十六条** 律师与委托人发生纠纷的，律师事务所的解决方案应当充分尊重律师本人的意见，律师应当服从律师事务所解决纠纷的决议。  **第二节 禁止不正当竞争**  **第七十七条** 律师和律师事务所不得采用不正当手段进行业务竞争，损害其他律师及律师事务所的声誉或者其他合法权益。  **第七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律师执业不正当竞争行为：  　　（一）诋毁、诽谤其他律师或者律师事务所信誉、声誉；  　　（二）无正当理由，以低于同地区同行业收费标准为条件争揽业务，或者采用承诺给予客户、中介人、推荐人回扣、馈赠金钱、财物或者其他利益等方式争揽业务；  　　（三）故意在委托人与其代理律师之间制造纠纷；  　　（四）向委托人明示或者暗示自己或者其属的律师事务所与司法机关、政府机关、社会团体及其工作人员具有特殊关系；  　　（五）就法律服务结果或者诉讼结果作出虚假承诺；  　　（六）明示或者暗示可以帮助委托人达到不正当目的，或者以不正当的方式、手段达到委托人的目的。  **第七十九条** 律师和律师事务所在与行政机关、行业管理部门以及企业的接触中，不得采用下列不正当手段与同行进行业务竞争：  　　（一）通过与某机关、某部门、某行业对某一类的法律服务事务进行垄断的方式争揽业务；  　　（二）限定委托人接受其指定的律师或者律师事务所提供法律服务，限制其他律师或律师事务所正当的业务竞争。  **第八十条** 律师和律师事务所在与司法机关及司法人员接触中，不得采用利用律师兼有的其他身份影响所承办业务正常处理和审理的手段进行业务竞争。  **第八十一条** 依照有关规定取得从事特定范围法律服务的律师或律师事务所不得采取下列不正当竞争的行为：  　　（一）限制委托人接受经过法定机构认可的其他律师或律师事务所提供法律服务；  　　（二）强制委托人接受其提供的或者由其指定的律师提供的法律服务；  　　（三）对抵制上述行为的委托人拒绝、中断、拖延、削减必要的法律服务或者滥收费用。  **第八十二条** 律师或律师事务所相互之间不得采用下列手段排挤竞争对手的公平竞争：  　　（一）串通抬高或者压低收费；  　　（二）为争揽业务，不正当获取其他律师和律师事务所收费报价或者其他提供法律服务的条件；  　　（三）泄露收费报价或者其他提供法律服务的条件等暂未公开的信息，损害相关律师事务所的合法权益。  **第八十三条** 律师和律师事务所不得擅自或者非法使用社会专有名称或者知名度较高的名称以及代表其名称的标志、图形文字、代号以混淆误导委托人。  　　本规范所称的社会特有名称和知名度较高的名称是指：  　　（一）有关政党、司法机关、行政机关、行业协会名称；  　　（二）具有较高社会知名度的高等法学院校或者科研机构的名称；  　　（三）为社会公众共知、具有较高知名度的非律师公众人物名称；  　　（四）知名律师以及律师事务所名称。  **第八十四条** 律师和律师事务所不得伪造或者冒用法律服务荣誉称号。使用已获得的律师或者律师事务所法律服务荣誉称号的，应当注明获得时间和期限。律师和律师事务所不得变造已获得的荣誉称号用于广告宣传。律师事务所已撤销的，其原取得的荣誉称号不得继续使用。  **第七章 律师与所任职的律师事务所关系规范**  **第八十五条** 律师事务所是律师的执业机构。律师事务所对本所执业律师负有教育、管理和监督的职责。  **第八十六条** 律师事务所应当建立健全执业管理、利益冲突审查、收费与财务管理、投诉查处、年度考核、档案管理、劳动合同管理等制度，对律师在执业活动中遵守职业道德、执业纪律的情况进行监督。  **第八十七条** 律师事务所应当依法保障律师及其他工作人员的合法权益，为律师执业提供必要的工作条件。  **第八十八条** 律师承办业务，由律师事务所统一接受委托，与委托人签订书面委托合同，按照国家规定统一收取费用。  **第八十九条** 律师及律师事务所必须依法纳税。  **第九十条** 律师事务所应当定期组织律师开展时事政治、业务学习，总结交流执业经验，提高律师执业水平。  **第九十一条** 律师事务所应当认真指导申请律师执业实习人员实习，如实出具实习鉴定材料和相关证明材料。  **第九十二条** 律师事务所不得从事法律服务以外的经营活动。  **第九十三条** 律师和律师事务所应当按照国家规定履行法律援助义务，为受援人提供法律服务，维护受援人的合法权益。  **第九十四条** 律师事务所不得指派没有取得律师执业证书的人员或者处于停止执业处罚期间的律师以律师名义提供法律服务。  **第九十五条** 律师事务所对受其指派办理事务的律师辅助人员出现的错误，应当采取制止或者补救措施，并承担责任。  **第九十六条** 律师事务所有义务对律师、申请律师执业实习人员在业务及职业道德等方面进行管理。  **第八章 律师与律师协会关系规范**  **第九十七条** 律师和律师事务所应当遵守律师协会制定的律师行业规范和规则。律师和律师事务所享有律师协会章程规定的权利，承担律师协会章程规定的义务。  **第九十八条** 律师应当参加、完成律师协会组织的律师业务学习及考核。  **第九十九条** 律师参加国际性律师组织并成为其会员的，以及以中国律师身份参加境外会议等活动的，应当报律师协会备案。  **第一百条** 律师和律师事务所因执业行为成为刑、民事被告，或者受到行政机关调查、处罚的，应当向律师协会书面报告。  **第一百零一条** 律师应当积极参加律师协会组织的律师业务研究活动，完成律师协会布置的业务研究任务，参加律师协会组织的公益活动。  **第一百零二条** 律师应当妥善处理律师执业中发生的纠纷，履行经律师协会调解达成的调解协议。  **第一百零三条** 律师应当执行律师协会就律师执业纠纷作出的处理决定。  律师应当履行律师协会依照法律、法规、规章及律师协会章程、规则作出的处分决定。  **第一百零四条** 律师应当按时缴纳会费。  **第九章 附 则**  **第一百零五条** 律师和律师事务所违反本《规范》的，律师协会应当依据《律师协会会员违规行为惩戒规则》和相关行业规范性文件实施处分。  **第一百零六条** 地方律师协会可以依据本规范，结合本地区情况制定实施细则。该实施细则与本规范不得冲突，并报全国律师协会备案后实施。  **第一百零七条** 本规范自颁布之日起施行。本规范以修正案的方式进行修改，修正案由常务理事会通过后试行，理事会通过后正式实施。  **第一百零八条** 本规范由中华全国律师协会常务理事会解释。 |